

제270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수석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22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4월 13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4월 20일

2. 제안이유

-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체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마곡15누리·드림·노블키즈·스마일·푸른별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재위탁 심의를 실시하여
-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- 사업명: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 운영
- 위탁기간
 - 드림·노블키즈·스마일·푸른별 어린이집: 2021.1.1.~2025.12.31.(5년)
 - 마곡15누리 어린이집: 2020.11.1.~2024.10.31.(4년 예정)
 - ※ 공동주택 무상임대 협약서 기간에 따름
- 위탁근거: 영유아보육법 제24조
- 선정방법: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(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)

5. 검토의견

- 이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□ **영유아보육법**

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